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

UDID ~ 번호	의안 번호	2015	~	9
----------------	----------	------	---	---

제출일자	2015. 2. 23.
제출자	표 주숙 의원외 6인 발의

1. 제안이유

○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,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제도적 기반·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O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
 -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와
 -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운영
- O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로 구성
- O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
- O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와 임시회 구분
- O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과 일비 등을 지급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 법령
 - (1)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
- 나. 예산 조치 : 2015년 추경예산 확보
- 다. 집행부의견조회 : 기획감사실, 주민생활지원실과 합의
- 라. 기타 사항
 - (1) 부패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 - 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 - (3) 입법예고
 - (가) 예고기간 : 2015. 2 23 ~ 3. 2
 - (4)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
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거창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"여성친화도시"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,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 는 지역을 말한다.
 - 2. "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"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.
 - 가. 도시기반시설: 도로 및 교통, 공원 및 녹지, 공동시설 등
 - 나. 공공이용시설 : 공공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
 - 다. 주거단지 : 단지 조성, 주택 내부 등
- 제3조(적용범위) 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.
 - ② 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.
- 제4조(군수 및 군민의 책무) ① 거창군수(이하 "군수"이라 한다)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, 군민, 전문가,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 - ② 거창군민(이하 "군민"이라 한다)은 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·실시 및 평가

- 제5조(계획 수립 등) 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 도별 시행계획(이하 "조성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 - 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- 2.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
 - 3. 주요 정책과제
 - 4.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
 - 5.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
- 제6조(계획 실시 등)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.
 - ②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,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제7조(추진실적의 평가 및 반영) 군수는 필요한 경우 매년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.

제3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내용

- 제8조(조성 기준의 설정)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.
 - 1. 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
 - 2. 여성의 경제·사회적 평등의 실현
 - 3.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
 - 4.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
 - 5.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
 - 6.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

- 제9조(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) 군수는 도시공간계획(도로 및 교통, 공원 및 녹지, 산업단지 조성)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도시기반시설
 - 가. 보행 편의
 - 나. 대중교통의 안전성
 - 다. 자연친화적 환경조성
 - 라. 직장·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
 - 2. 공공이용시설
 - 가.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
 - 나.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
 - 다.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
 - 3. 주거단지
 - 가. 다양한 가족(다세대 가구, 대가족, 독신가구, 학생가구, 한 부모 가족, 다문화 가족 등)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
 - 나.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
- 제10조(여성능력개발 효율화) 군수는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1조(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) 군수는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·가족·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2조(지역특성화 사업 추진) 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 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 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제4장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 운영

- 제13조(구성 및 운영) 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서포터즈(이하 "서포터즈"라 한다)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"서포터즈"란 관내 거주하는 군민 중에서 군수의 위촉을 받아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는 군민을 말하며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 - 1. 주민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
 - 2. 여성친화 관점을 반영한 의견 제시
 - 3.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및 홍보
- 제14조(활동지원) 군수는 서포터즈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, 서포터즈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을 제 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15조(유공자표창) 군수는 다른 서포터즈의 모범이 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우수한 활동을 한 서포터즈에게 「거창군 포상조례」에 따라 시상할 수 있다.

제5장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

- 제16조(설치)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거창군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- 제17조(기능)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.
 - 1.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
 - 2.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
 - 3.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,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
 - 4.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·홍보 및 지식·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

- 5.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
- 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.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.
- 제18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.
 -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
 - 1. 여성친화도시업무 관련 실·과·사업소장
 - 2. 여성정책과 도시공간 정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 - 3. 전문직 여성·직장여성·전업주부·영유아 돌봄 여성·소외계층 여성 등
 - 4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
- 제19조(위원장의 임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20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
 -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21조(위원의 해촉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 - 1.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
 - 2.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
 - 3.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특별한 사정없이 2회 연속 위원회 불참 등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

- 제22조(회의) 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,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.
 - 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·장소·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 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 - 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.
- 제23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.
 -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.
- 제24조(실비변상)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「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제2조(여성친화도시 협의체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거창군 여성 친화도시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로 본다.
- 제3조 (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 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거창 군 여성친화도시 파트너즈는 이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 서포터즈 로 본다.